

獨占規制 및 公正去來에 관한法律 施行令 中 改正令(案)

1999. 12. 11. 입법예고

新舊條文對比表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p> <p>① (생략)</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제1호 각목에 해당하는 법인과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을 것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p> <p>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기타 법인</p> <p>2. 다른 회사와 상호출자가 없을 것</p> <p>3. <삭제 '98.4.1></p> <p>4. 다른 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또는 다른 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을 것</p>	<p>제3조의2(기업집단으로부터의 제외)</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경제력집중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해관계자의 요청에 의하여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의 범위에서 이를 제외할 수 있다.</p> <p>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에 출자한 경우에 한한다)이 당해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 단, 다른 회사 와의 상호출자 및 당해 회사에 대한 출자자와의 회사로부터의 채무보증이 없는 경우에 한한다. 가.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적용범위)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p> <p>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사·공단 기타 법인</p> <p>2.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회사로서 최다출자자(동일인 및 동일인 관련자가 출자한 경우를 포함한다)가 2이상이고, 정관·출자자간 계약내용 및 임원구성 등에 비추어 어느 출자자도 당해 회사를 사실상 지배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회사 가. 중복과잉투자 해소를 위한 사업구조조정과정에서 2이상의 회사가 자산을 현물출자하여 설립한 신설법인 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제1호 및 제2호에 의한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민간투자사업법인</p>